



# 2016년 교육부(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 교육부 2016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서 이공분야 발취

2016. 1.

교육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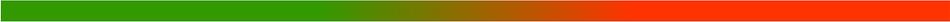
# 목차

I.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	1
1. 추진 근거 및 체계 .....	3
2. 사업구조 및 분야별 주요사업 .....	6
3. 사업추진전략체계도 .....	8
II. 2016년 예산 및 추진 일정 .....	9
1.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분야) 주요 개선사항 .....	11
2. 2016년 사업예산 현황 .....	13
III.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이공분야) .....	19
1.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	21
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28
3.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	33
IV. 행정사항 및 공통적용사항 .....	49
1. 행정사항 .....	51
2. 공통적용사항 .....	52





# I . 학술·연구지원사업 개 요





# 1

## 추진 근거 및 체계

### □ 사업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 학술진흥법 >

- ◇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학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학술풍토를 조성하며, 학술활동의 성과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에 따른 정책 및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한다.

○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교육부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교육부 훈령)」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 ◇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 ◇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에 따른 기초연구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기초연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초연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 추진 경과

- ('63)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79) 「학술진흥법」 제정
- ('01) “기초학문 발전방안” 마련 추진
- ('05) 학술연구조성사업을 인문사회와 기초과학으로 분리
- ('05) 「학술진흥법」이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
- ('07) “인문학진흥사업” 신규 추진
- ('08) (舊)교육과학기술부 출범(교육인적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통합)
- ('09) 학술연구조성사업 사업구조 개편
  - ※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 기초연구, 리더연구, 기반연구를 인문사회학술역량 강화사업으로 통합
  - ※ (舊)한국학술진흥재단 및 (舊)한국과학재단 등이 “한국연구재단”으로 통합
- ('11)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이 「학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
- ('13)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舊)교육과학기술부의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을 교육부와 미래부로 이관하고, 관련 규정 정비\*
  - ※ 구 교육인적자원부 사업 중 미래부 이관 사업 : 신진교수연구, 여성과학자 지원
  - \* 인문사회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전부 개정,  
이공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정
- ('14, '15) 인문사회 분야 및 이공 분야를 포함한 6,029억원 규모의 학술·연구지원 사업 추진
- ('16)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미래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계획 및 신규과제 통합 공고 추진
  - ※ 정부R&D 혁신방안('15.5), 제2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15.10)

## □ 추진체계

-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연도별 종합계획은 “종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립

- (전문기관) 사업별 세부집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협약, 사업비 집행, 선정 및 결과 평가,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 관리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 (주관연구기관) 학술·연구지원사업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학술·연구 관련 업무 지원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학회 등

### < 사업 추진 체계 >



## 2 사업구조 및 분야별 주요사업

### □ 사업 구조

- 인문사회·한국학 분야와 이공 분야 등 전 학문분야를 아우르는 학술·연구지원 체계
  - 동 구조내에서 개인-공동-집단으로 사업을 분류
  - 학문후속세대 및 신진-중견-우수학자로 이어지는 경력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 학술·연구 기반 구축을 통해 연구자의 학술활동과 연구지원을 뒷받침

#### < 사업 구조 및 관계 >



[이공 분야]

사업 유형	사업명	사업목적 및 특성	지원대상	지원단가 (백만원/연)	지원기간 (연)
개인	기본연구	이공분야 풀뿌리 기초 연구지원	학술진흥법 제2조 제5호의 연구자	10~50	1~10*
	보호연구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분야의 연구 지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의 역량 있는 연구자의 연구활동 지원	지역대학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및비전임교원		
	박사후 국내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국내 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연수기회 제공	국내·외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인 자	34	1
	박사후 국외연수	박사학위를 취득한 연구자에게 해외대학 또는 연구소에서의 선진 연수기회 제공	국내 대학에서 박사학위 취득 5년이내인 자		
	리서치펠로우	박사급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포함***)	50	1~3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연구역량이 탁월한 젊은 박사후 연구자의 초기 일자리 정착과 연구비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 학위 취득 연구자 중 만39세 이하이거나 박사학위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130~150	5 (3+2)
집단	대학중점 연구소지원	대학연구소 지원을 통해 대학에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젊은 연구자를 양성하여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대학 부설연구소	500이내	9 (3+3+3)

\* 연간 적정 신규 과제수 유지를 위해 연구기간 9~10년 과제는 신규과제 수의 10% 이내로 지원

\*\*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후 연구원

### 3

## 사업 추진 전략체계도





**Ⅱ. 2016년**  
**예산 및 추진 일정**





# 1

## 학술연구지원사업(이공분야) 주요 개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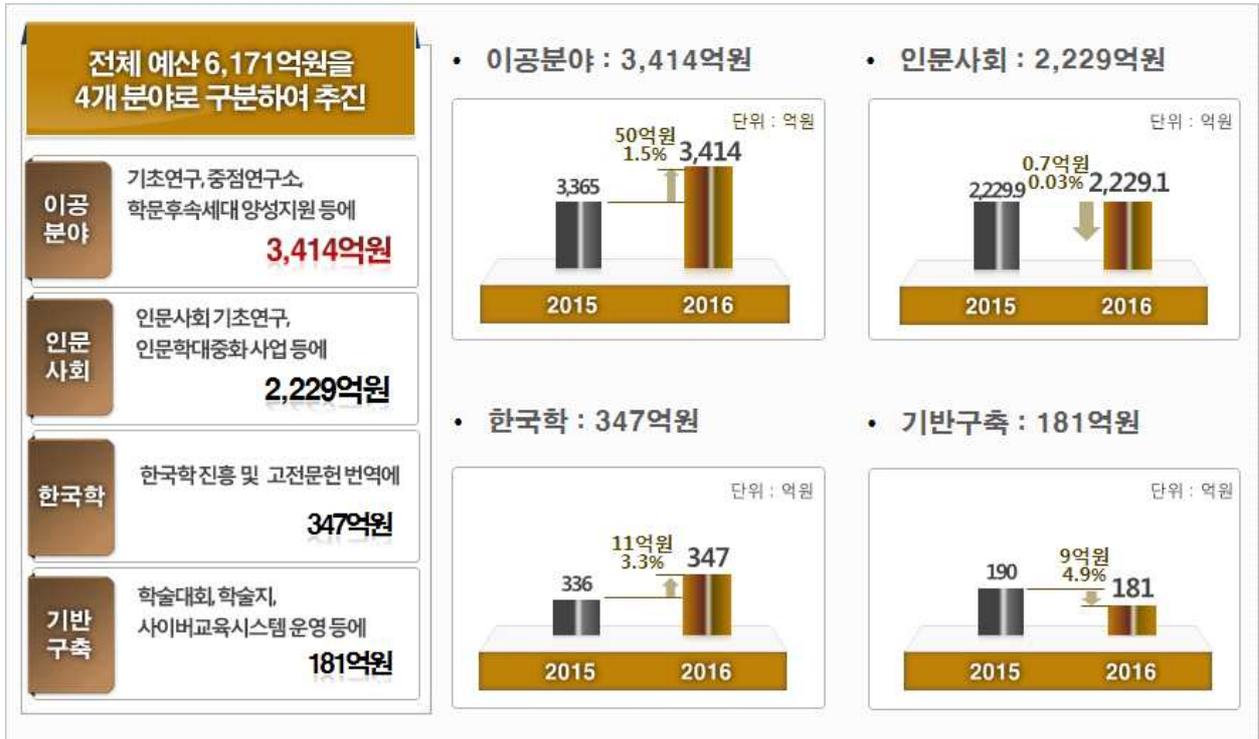
유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2015	2016											
개인	이공학 개인기초	사업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년이내, 5천만원 이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10년, 1~5천만원</li> <li>[연구기간별 지원규모]</li>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연구 기간</th> <th rowspan="2">1~5년*</th> <th colspan="2">장기지원연구</th> </tr> <tr> <th>6~8년</th> <th>9~10년</th> </tr> </thead> <tbody> <tr> <td>지원 규모</td> <td>신규지원 규모의 85%내외</td> <td>신규지원 규모의 5%이내</td> <td>신규지원 규모의 10%이내</td> </tr> </tbody> </table> </ul>	연구 기간	1~5년*	장기지원연구		6~8년	9~10년	지원 규모	신규지원 규모의 85%내외	신규지원 규모의 5%이내	신규지원 규모의 10%이내
		연구 기간	1~5년*	장기지원연구										
				6~8년	9~10년									
		지원 규모	신규지원 규모의 85%내외	신규지원 규모의 5%이내	신규지원 규모의 10%이내									
		연구 개시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기(6.1)와 하반기(11.1)로 구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반기, 6.1) 6~10년 지원과제</li> <li>(하반기, 11.1) 1~5년 지원과제</li> </ul>										
	간 접 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기간 내 선정당시 간접비 고시율 적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과제 협약 시 당해년도 간접비 고시율 적용</li> </ul>											
	선정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라인평가</li> <li>※ 단, 한국형 SGER 및 보호연구는 별도 평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년이하 과제) 온라인 평가</li> <li>(6년이상 과제) 온라인 평가 후 토론 평가 실시</li> <li>※ 단, 한국형 SGER 및 보호연구는 별도 평가</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 평가 실시</li> </ul>											
	중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간평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연구기간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매 3년 단위로 중간평가 실시</li> </ul>											
	박사후 국내·외 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간접비 없음</li> <li>※ 연수비 : 3,3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제 관리 효율화를 위해 간접비 별도 지원</li> <li>※ 연수비 : 연수비 3,300만원 + 간접비 100만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자와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이 직접 협약 체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예 : 박사학위 취득 기관)을 통한 협약 체결 및 연수비 관리·정산 등 실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구착수 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등 의무 부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착수·진행상황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16년 신규과제부터 적용)</li> </ul>												

유형	사업명	주요 제도 개선 및 중점 추진 내용	
		2015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업 시 잔여예산을 반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으로 취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잔액은 임용된 기관으로 이관하여 직접비로 사용 (단, 연구 개시 8개월 이후 및 지도교수 동의시에 한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국내연수 : 상·하반기 연2회 공모 (6.1/11.1 연수개시)</li> <li>■ 박사후국외연수 : 상반기 연1회 공모 (9.1 연수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후국내·외연수 : 상반기 연 1회 공모 (9.1 연수개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우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우대</li> </ul>
	리서치 펠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상반기(6.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하반기(11.1)</li> </ul>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하반기(11.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상반기(6.1)</li> <li>※ 신규과제 지원금액 : 해당연도 실지원개월 수 반영 (총 7개월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 과제 연구책임자 신청 제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리서치펠로우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종료 10개월 이내 신청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취득 외 기관에서의 연구에 대해 선정시 우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학위 취득 외 기관에서의 연구 시 우대</li> </ul>
집단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하반기(9.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과제 연구개시일 : 5.1</li> <li>※ 신규과제 지원금액 : 해당연도 실지원개월 수 반영 (총 8개월분)</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 공모과제(연구소) 추진</li> <li>※ 사회이슈 등을 고려하여 국가적 지원 필요성이 높은 분야 지정 공모(예:독도 생태 연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토→토론편가→발표평가→PM협의체→종합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검토→발표평가→PM협의체→종합심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확산형 신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과확산형 신규과제 미선정</li> </ul>

## 2 2016년 사업예산 현황

### □ 총괄현황

- '16년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15년(6,121억원)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6,171억원임



- (이공분야) 기초연구, 중점연구소 지원,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3,414억원 편성
- (인문사회)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 대중화 사업 등에 2,229억원 편성
- (한국학) 한국학 진흥 및 고전문헌 번역에 347억원 편성
- (기반구축) 학술대회, 학술지, 사이버교육시스템 운영 등에 181억원 편성

(단위 : 백만원)

구분	인문사회	이공	한국학	기반구축	계
'15년(A)	222,985 (36.4%)	336,500 (55.0%)	33,624 (5.5%)	18,998 (3.1%)	612,107
'16년(B)	222,911 (36.1%)	341,469 (55.3%)	34,724 (5.6%)	18,056 (3.0%)	<b>617,160</b>
증감(B-A)	△74 (0.03%)	4,969 (1.5%)	1,100 (3.3%)	△942 (4.9%)	5,053 (0.8%)

※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CORE) 별도 추진 : 600억원('16년 신규)

□ 이공분야 예산 세부현황

- '16년 이공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전체예산은 3,414억원이며, 3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
- (사업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2,681억원(78.5%), 대학중점연구소 252억원(7.4%), 학문후속세대양성 482억원(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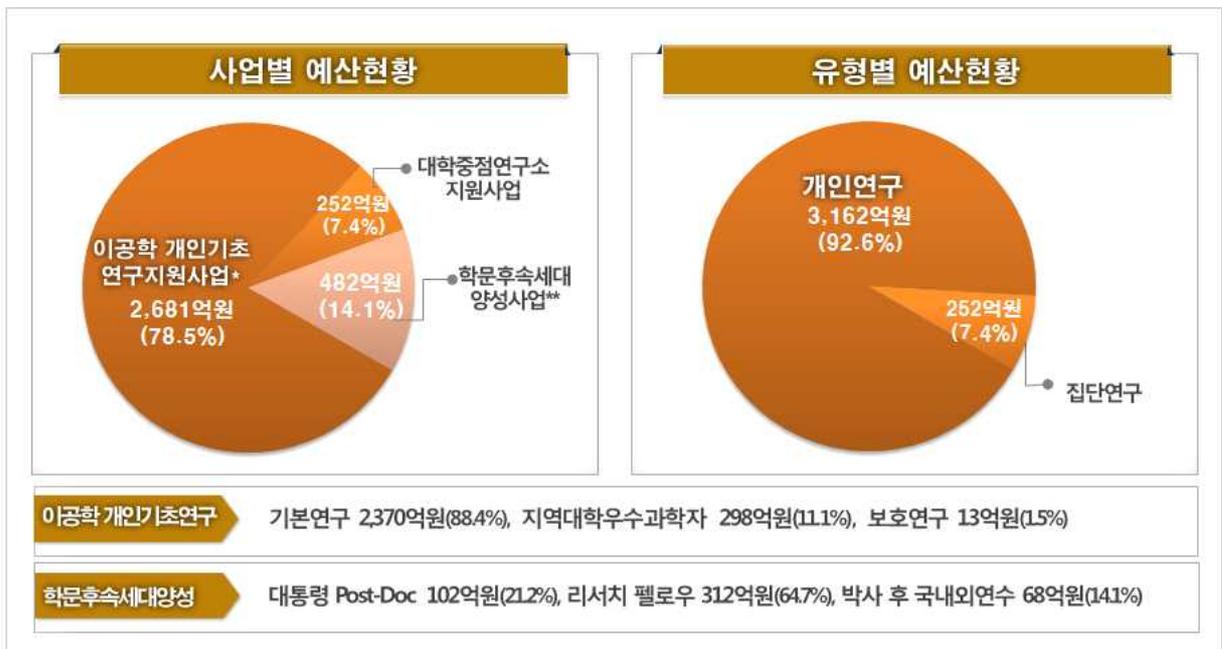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이공학개인기초 연구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합계
268,050 (78.5%)	25,238 (7.4%)	48,181 (14.1%)	341,469 (100.0%)

- (유형별) 개인연구 3,162억원(92.6%), 집단연구 252억원(7.4%)

(단위 : 백만원)

개인연구	집단연구	합계
316,231 (92.6%)	25,238 (7.4%)	341,469 (100.0%)



## 참고1 이공분야 사업별·유형별 예산 세부 현황

### [사업별]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이공학개인지초 연구지원	기본연구	237,050	69.4		
	보호연구	1,250	0.4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9,750	8.7		
	합계	268,050	78.5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5,238	7.4		
	학문후속 세대양성	박사후국내·외 연수	6,800	2.0	
		리서치펠로우	31,200	9.1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10,181	3.0	
	합계	73,419	21.5		
총계	341,469	100.0			

### [이공 유형별]

(단위 : 백만원, %)

유형	사업명	예산	비율	비고
개인	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	268,050	78.5	
	학문후속세대양성	48,181	14.1	
	합계	316,231	92.6	
집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5,238	7.4	
	합계	25,238	7.4	
총계		341,469	100.0	

## 참고2 2016년 이공분야 지원 과제 수

### [이공 분야]

(단위 : 백만원, 개)

주요사업	세사업	예산		과제수		
		'15	'16	계속	신규	
이공학개인 기초연구지원	기본연구	237,050	237,050	2,824	1,905	
	보호연구	1,250	1,250	11	14	
	지역대학우수과학자	24,750	29,750	318	277	
이공학학술연구 기반구축	학문후속 세대양성	박사후 국내연수	3,300	3,400	-	100
		박사후 국외연수	1,650	3,400	-	100
		리서치펠로우	31,200	31,200	169	452
		대통령 Post- Doc. 펠로우십	11,900	10,181	70	7
	대학중점연구소지원	25,400	25,238	38	8	
합 계		336,500	341,469	3,430	2,863	

### 참고3

### 교육부 이공분야 주요 사업 추진 일정(과제 신청 캘린더)

시기	주요일정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과제 신청 공고 (박사후 국·내외 연수, 대통령 Post-Doc., 중점연구소, 이공학 개인기초(6~10년))</li> </ul>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과제 접수 (박사후 국·내외 연수, 대통령 Post-Doc., 중점연구소, 이공학 개인기초(6~10년))</li> <li>계속과제 접수 (기본연구, 보호연구)</li> </ul>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과제 접수 (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 '10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li> </ul>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중점연구소 신규과제 선정</li> </ul>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학문후속세대 신규과제 선정 (박사후 국내·외 연수, 대통령 Post-Doc., 이공학 개인기초(6~10년))</li> <li>신규과제 연구개시(대학중점연구소)</li> <li>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보호연구, '10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li> </ul>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과제 신청 공고 (이공학 개인기초(1~5년), SGER, 리서치펠로우)</li> <li>신규과제 연구개시 (대통령 Post-Doc.,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6~10년))</li> <li>계속과제 연구개시(지역대학, 리서치펠로우)</li> <li>계속과제접수 ('12년 선정 대통령 Post-Doc.,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li> </ul>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접수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1~5년), 리서치펠로우)</li> </ul>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과제 접수 (기본연구, 보호연구, '13년, '14년, '15년 선정 대통령 Post-Doc.)</li> </ul>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과제 연수개시 (박사후 국내·외 연수)</li> <li>계속과제 연구개시 ( '12년 선정 대통령 Post-Doc.,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중점연구소)</li> </ul>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반기 신규 과제 선정(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1~5년), SGER, 리서치펠로우)</li> <li>계속과제 접수 (리서치펠로우)</li> </ul>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과제 연구개시(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5년이하), SGER, 리서치펠로우)</li> <li>계속과제 연구개시 (기본연구, 보호연구, '13년, '14년, '15년, 선정 대통령 Post-Doc.)</li> <li>계속과제접수('16년 선정 중점연구소·대통령Post-Doc.)</li> </ul>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속과제 연구개시 (리서치펠로우)</li> </ul>





## Ⅲ.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이공분야)



1. 이공분야 학문 후속세대양성사업 .....	21
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28
3.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	33



# 1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 가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이공분야 박사후 연구자에게 국내·외 대학 및 연구소에서의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학술연구의 지속성 유지 및 연구능력의 질적 향상 유도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7조(학문후속세대의 육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추진경과

- ('82) 박사후국외연수지원사업 시작(舊과학기술처)
- ('87) 박사후국내연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01)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04) 해외연수 관련사업 교육부 이관
- ('06) 박사후 국내·외연수지원,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을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통합
- ('11) 우수 박사후연구원 지원을 위한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설
- ('16) 리서치펠로우 사업을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 사업에서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이관

##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6년 신규과제
박사후 국내연수	개인 (연수 지원)	이공 학 술분야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내 인자	공모	1년	34백만원*** /연 (간접비 포함)	100개 (상반기)
박사후 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내 인자				100개 (상반기)
리서치펠로우	개인 (연구 지원)		리서치펠로우 고용연구원 (고용예정자 포함*)		3년 이내	50백만원 내외/연 (간접비 포함)	452개 (하반기)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개인 (연수+연구비)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5년 (3+2)	130백만원**** /연	7개 (상반기)

\* 대학의 리서치펠로우 고용 확약을 받은 박사후 연구원

\*\* 1976.1.1 이후 출생자(단, 만 40세 이상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의 경우 지원 가능)

\*\*\* 연수활동비 33백만원(보험부담금, 퇴직금 포함), 간접비 100만원 별도 지원

\*\*\*\* 인건비 50백만원(보험금, 퇴직금 포함), 연구비 80백만원

※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 중 리서치펠로우를 제외한 세부사업은 각각 1회에 한하여 수혜 가능

##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12		'13		'14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m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m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mnIF)
학문후속세대 양성사업	260	72.65	241	70.47	335	73.36

※ SCI급 논문 : SCI(E)

※ m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SCI(E) 논문 영향력지수(IF)의 분야간 차이를 순위에 기반하여 보정하는 지표로 논문성과 질적수준 제시(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음)

## □ 기대효과

- 국가경쟁력 구축의 기반인 우수 과학기술인적자원의 지원을 통해 신규 학문후속세대의 연구역량 제고
- 국내·외 취업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미래 학문후속세대에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 안정적 일자리 및 연구환경 창출
- 연구자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및 우수연구성과 창출

## 나 2016년 사업계획

### ◇ (박사후 국내·외연수)

- 신규 선정 시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인 자 우대
- 박사후 국내·외연수 과제 관리 효율화를 위해 주관기관에 간접비를 별도 지원하여 주관연구기관을 통한 협약 체결 및 과제 관리
  - ※ '16년 연수비 : 연수활동비 3,300만원 + 간접비 100만원
- 박사후국외연수의 경우 연수에 전념하도록 연수착수·중간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 ※ '16년 선정 과제부터 해당되며, '15년 이전 과제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 ◇ (리서치펠로우 및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 타 과제 연구책임자 중 리서치펠로우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 신청 가능
  - ※ (현행) 타 과제 연구책임자 신청 제한 → (개선) 연수개시일을 기준으로 10개월 이내 종료 예정인 리서치펠로우 사업 수행자는 지원 가능
- 신규 선정 시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은 박사학위 취득 이외 기관에서의 연구 우대
  - ※ 보다 독립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17년부터 박사학위 취득기관에서 연구 제한 적용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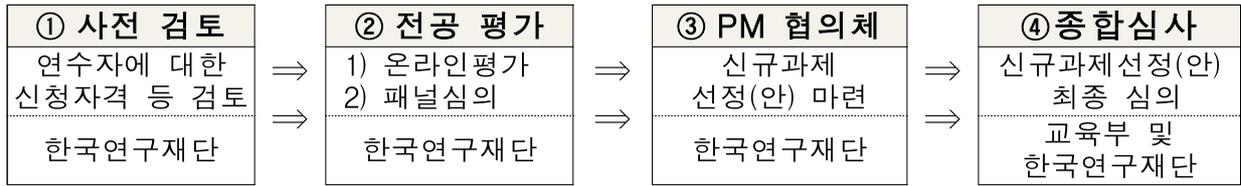
## □ 신규과제 선정

### ○ 사업별 신청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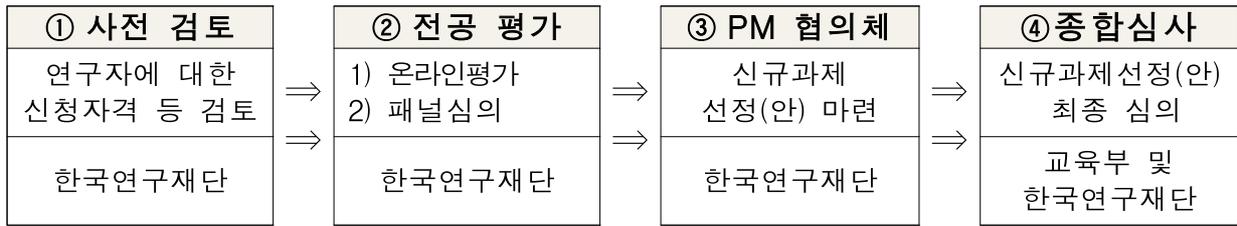
- (박사후국내연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11.1.1일 이후 취득자)
- (박사후국외연수)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 ("11.1.1일 이후 취득자)
- (리서치펠로우) 대학에서 리서치펠로우로 고용된 연구원 또는 고용예정자
-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 만 39세 이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 ※ 단, 만 40세 이상 연구자 중 박사학위 취득 후 7년 이내인 자 지원 가능

○ 평가절차 및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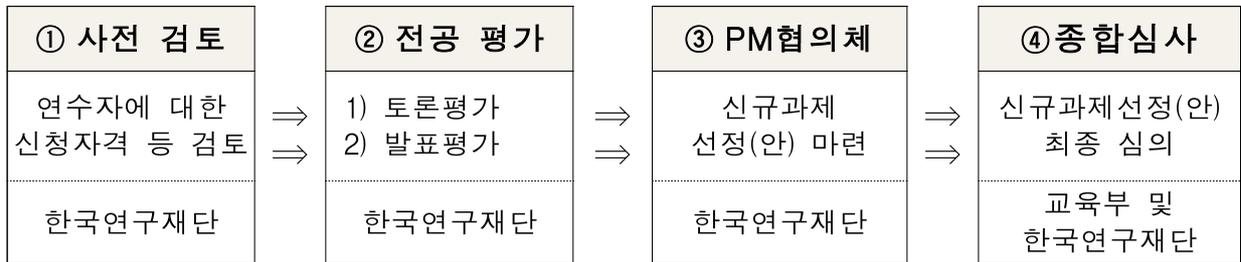
- 박사후 국내·외 연수



- 리서치펠로우



- 대통령 Post-Doc.펠로우십



※ 대통령Post-Doc.펠로우십에 한해 토론평가 후 발표평가 대상 선정자(선정 예상수의 3배수 내외)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평가항목

세부사업	평가항목
박사후 국내·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수자의 우수성</li> <li>▪ 연수의 필요성 및 계획의 타당성</li> <li>▪ 연수기관의 적합성 및 우수성 등</li> </ul>
리서치펠로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목표의 창의성·도전성</li> <li>▪ 연구내용 및 방법</li> <li>▪ 활용 및 기대효과</li> <li>▪ 연구자 역량</li> </ul>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의 잠재력</li> <li>▪ 연구계획서의 우수성</li> <li>▪ 연구기관 지원의 적정성</li> </ul>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 가능

□ **계속과제 관리 (리서치펠로우,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 연차점검

- (점검 대상) '14~'15년 선정 리서치펠로우 169과제, '12년, '14년, '15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51과제
- (점검 방식)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해 점검

① 관련보고서 접수	⇒	② 연차점검	⇒	③ PM협의체
연차실적 계획서 접수 (종료 2개월 전)	⇒	온라인 연차점검	⇒	차년도 연구비 및 지원여부 확정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 (결과 활용) 점검 결과에 따라 계속지원 여부 및 차년도 연구비 조정

○ 단계평가

- (평가 대상) '13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19과제
- (평가 방식) 단계보고서\*를 바탕으로 전공심사 및 종합심사 추진
- \* 1단계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제출

단계	평가구분	평가 내용	비고
1단계	전공심사	▪ 1단계 연구계획 대비 수행실적 및 2단계 연구계획 평가	전공심사단
2단계	종합심사	▪ 1단계 결과 검토 및 2단계 지원여부 최종결정	종합심사단

-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2단계 지원여부 확정 및 연구비 차등 지급

□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정부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지원

- \* (리서치펠로우) 연구책임자가 대학교원(전임·비전임)으로 이직하는 경우. 단, 잔여 연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협약 해약  
(박사후국내외연수)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 기관으로 취업되어 연구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경우. 단, 연수개시 8개월 이후 및 지도교수 동의시에 한함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 종료과제 성과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으로 결과보고서(3쪽 내외)를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가능

-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소개서,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li> <li>'16년 상반기 신규과제 사업공고 (박사후국내·외연수, 대통령Post-Doc.펠로우십)</li> </ul>
'16.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상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li> </ul>
'16.3월 ~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평가</li> <li>'14년, '15년 선정 리서치펠로우 계속과제 연차점검</li> </ul>
'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상반기 신규과제 선정</li> </ul>
'16.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하반기 신규과제 사업공고(리서치펠로우)</li> <li>'16년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신규과제 연구개시(6.1)</li> <li>'14년, '15년 선정 리서치펠로우 연구개시(6.1)</li> </ul>
'16.7월 ~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접수·선정평가</li> <li>'12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연차점검</li> </ul>
'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박사후국내·외연수 신규과제 연수개시(9.1)</li> <li>'16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평가</li> <li>'12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수개시(9.1)</li> </ul>
'16.9 ~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하반기 신규과제 선정</li> <li>'13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단계평가</li> <li>'14년, '15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차점검</li> </ul>
'16.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리서치펠로우 신규과제 연구개시(11.1)</li> <li>'13~'15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연수개시(11.1)</li> <li>'16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연차점검</li> <li>'14년 추가선정 리서치펠로우 계속과제 연차점검</li> </ul>
'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선정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계속과제 협약체결</li> <li>'14년 추가선정 리서치펠로우 연구개시(12.17)</li> </ul>

##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박사후국내·외 연수	예산	4,950	6,800
	과제수	150 (신규 150)	200 (신규 200)
리서치펠로우	예산	31,200	31,200
	과제수	591 (신규 87, 계속 504)	621 (신규 452, 계속 169)
대통령Post-Doc. 펠로우십	예산	11,900	10,181
	과제수	83 (신규 12 / 계속 71)	77 (신규 7 / 계속 70)

## 2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지원

### 가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의 인프라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연구거점을 구축하고,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 중점연구소가 우수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 추진경과

- ('80) 대학부설연구소 지원사업 시작(교육부)
- ('94) 중점연구소와 우수연구소로 분리 지원 시작
- ('99) 중점연구소 지원사업 실시(연간 2억원 이내, 3단계 6년) 및 신청 조건 강화(대응투자, 공간확보, 대학의 육성의지 확인)
- ('05) 현재 대학중점연구소 사업모델\* 완성 (연간 5억원 이내, 3단계 9년)

## □ 지원 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6년 신규과제
기반구축형	집단	이공계 쏠분야	이공계 대학부설연구소*	공모	9년 (3+3+3)	5억원이내 /연 (간접비 별도)	8개 내외

\*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

※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

- 단계별 1차년도에 특별지원기자재 구입비 지원(1단계 2억원 이내, 2~3단계 1억원 이내), 단 3단계 진입 연구소의 경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 15% 내외 중 신청연구소에 한해 지원

## □ 사업 추진 성과

사업명	'12				'13				'14			
	논문수		인력양성		논문수		인력양성		논문수		인력양성	
	SCI	mrnlF	석사	박사	SCI	mrnlF	석사	박사	SCI	mrnlF	석사	박사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1,135	63.56	226	56	863	62.68	167	57	1,075	66.09	153	44

※ mrnl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SCI(E) 논문 영향력지수(IF)의 분야간 차이를 순위에 기반하여 보정하는 지표로 논문성과 질적수준 제시(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음)

## □ 기대효과

- 성장가능성이 큰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하여 장기지원(9년)함으로써 지역의 연구거점으로 육성하고 자립가능성 확보
  - 특히 대학 스스로 육성방안 및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연구소의 특성화·전문화 유도
- 연구소가 전임연구교수 및 전임연구인력에게 안정적으로 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여 젊은 우수연구자 육성

## 나 2016년 사업계획

- ◇ (평가 타당성 제고) '16년 모든 신규 신청 과제에 대해 발표평가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평가의 타당성 제고
  - ※ (기존) 발표평가는 토론평가 상위 2~3배수 과제만 시행 → (개선) 전체 신청과제에 대해 발표평가 실시
- ◇ (지정 공모 과제 지원) 신규과제 선정 시 국가·경제·사회적 중요성이 큰 분야를 지정하여 공모 (예 : 독도 생태 연구)

### □ 신규과제 선정

#### ○ 신청 자격

- 이공분야 대학부설연구소 중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연구소
  - ※ 대학별 자유공모 분야와 지정공모 분야 각 1개씩 신청 가능

#### ○ 평가 절차

##### - 평가 단계



- 평가 항목 : 연구소 기반구축, 연구수행 및 인력활용·양성 계획 등
  -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 연구 개시 : '16. 5. 1.

### □ 계속과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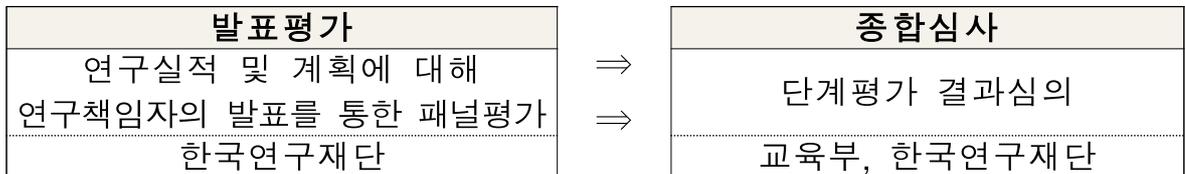
#### ○ 연차점검

- (점검 대상)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된 30개 연구소
  - ※ '09년 선정 17개, '12년 선정 2개, '14년 선정 5개, '15년 선정 6개

- (점검 방식) 연차실적계획서를 바탕으로 PM 점검
- (점검 내용) 당해연도 목표 대비 실적,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집행 및 편성 적절성 등 검토
- (결과 활용) 점검결과에 따라 차년도 연구계획 및 연구비 조정

○ 단계평가

- (평가 대상) '10년 선정된 8개 연구소
- (평가 방식)



- (평가 항목)

구분	평가항목
단계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의 지원실적</li> <li>▪ 성과목표 달성도</li> <li>▪ 연구과제 수행 결과 등</li> </ul>
단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소 육성계획</li> <li>▪ 성과목표·연구 및 인력양성 계획 등</li> </ul>

- ※ 계속과제 단계평가를 위한 세부계획을 별도로 수립·시행
- ※ 3단계 진입연구소의 경우, 정부 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자립화를 위한 평가 지표 등 반영

- (결과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3단계 지원여부 확정 및 연구비 차등지원

□ 종료과제 평가

- (평가 항목) '07년 선정된 8개 연구소
- (평가 항목) 최초 계획 대비 대학의 지원실적, 성과목표 달성도, 연구과제 수행결과, 정부지원 종료 후의 연구소 운영 계획 등
- ※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정

- (결과 활용) 평가결과가 60점 미만(100점 기준)인 연구책임자는 향후 3년간 국가연구 개발사업 신청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li> <li>▪ '16년 신규과제 사업공고</li> </ul>
'16.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신규과제 신청접수</li> </ul>
'16.3월 ~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신규과제 선정평가</li> <li>▪ '10년 선정 계속과제 단계보고서 접수 및 평가</li> <li>▪ '15년 선정 계속과제 (성과확산형)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li> </ul>
'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선정 신규과제 연구 개시</li> <li>▪ '10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연구 개시</li> </ul>
'16.6월 ~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li> </ul>
'16.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협약체결</li> </ul>
'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9년, '12년, '14년, '15년 선정 계속과제 연구 개시</li> <li>▪ '07년 선정 종료과제 최종보고서 접수</li> </ul>
'1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7년 선정 종료과제 최종보고서 평가</li> </ul>
'16.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선정 계속과제 연차실적계획서 접수 및 점검</li> </ul>
'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선정 계속과제 협약체결</li> </ul>

##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이공분야 대학중점연구소 지원	예산	25,400	25,238
	과제수	46 (신규 6 / 계속 40)	46 (신규 8내외 / 계속 38)

### 3

## 이공학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 가 사업 개요

#### □ 사업 목적

- 이공학분야 풀뿌리 개인기초연구를 폭넓게 지원하여 변혁적 연구기반을 확대하고 국가 연구역량을 제고
-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창의적 연구를 활성화

#### □ 지원근거 및 추진경과

##### ○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추진 등)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기초연구사업의 추진)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 추진경과

- ('89)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교육부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 착수
- ('04) 여성과학자, 지역대학우수과학자 등 순수기초연구사업 소관 부처 변경((舊)과기부→(舊)교육부)
  - ※ '국가혁신체제 정립을 위한 과학기술부 개편 방안'에 의거 변경
- ('09) 이공학분야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사업, 기초과학연구지원사업을 통합하여 일반연구자지원사업으로 개편
- ('13)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부, 미래부로 일반연구자지원사업 분리 이관
  - ※ (교육부) 기본, 보호, 리서치펠로우, 지역대학 / (미래부) 신진, 여성, 커리어 등
- ('16) 이공분야 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자 맞춤형 지원을 위해 미래부와 협력을 강화하여 사업계획 및 신규과제 통합 공고 추진
  - ※ 정부R&D 혁신방안('15.5), 제27차 국가과학기술 자문회의('15.10)

## □ 지원내용

세부사업명	사업 유형	지원 분야	지원대상	선정 방식	지원 기간	지원 규모	'16년 신규과제	연구 개시 ***
기본연구	개인 (연구 지원)	이공학 소분야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의 연구자*	공모	1~10 년	1~5천만원 /연 (간접비 포함)	1,905개	6.1/ 11.1
보호연구			14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지역대학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 제외) 전임 및 비전임 교원				277개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연구자

\*\* 지역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소재하지 않은 대학이며, 5대 과학기술 특성화대학은 DGIST, GIST, KAIST, POSTECH, UNIST을 의미

\*\*\* (연구기간 6~10년 과제) 상반기 6.1 연구개시, (연구기간 1~5년 과제) 하반기 11.1 연구개시

※ 리서치펠로우 지원사업은 학문후속세대양성사업으로 이관하고, 하반기 연구개시

## □ 사업 추진 성과

세부사업명	'12		'13		'14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 (mr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 (mrnIF)	SCI급 논문수	표준화된 학술지 영향력지수 (mrnIF)
이공학개인지초	6,150	61.02	6,101	60.67	7,434	60.88

※ SCI급 논문 : SCI(E)

※ mrnIF(Modified Rank Normalized Impact Factor) : SCI(E) 논문 영향력지수(IF)의 분야간 차이를 순위에 기반하여 보정하는 지표로 논문성과 질적수준 제시(100이 가장 높고, 0이 가장 낮음)

## □ 기대효과

- 이공분야 연구자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하여 창의적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연구자의 연구역량 강화
- 지역대학 연구자 등 상대적으로 연구환경이 열악한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 나 2016년 사업계획

◇ 교육부/미래부로 이원화된 개인기초연구사업의 지원체계, 시행계획, 사업공고와 관리를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운영

※ 교육부 신규과제 : 하반기 지원\*, 미래부 신규과제 : 상반기 지원

\* 단, 연구기간 6~10년 과제의 경우 상반기 지원

◇ 신규과제의 연구기간·연구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지원 하되, 과제 평가 시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을 평가

- (현재) 3년, 5천만원 → (개선) 1~10년, 1~5천만원

※ 연구자가 연구비 및 연구기간을 자율적으로 선택가능

◇ 신규과제 예산을 학문분야별(25개 CRB 기준)로 적정 배분하고, 각 학문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연구기간 구간별 지원 포트폴리오 수립·적용

[연구기간별 신규과제 예산 배분 안]

구분	3년 이하	4~5년	6~8년	9~10년	합계
비중	80%내외	5%이내	5%이내	10%이내	100%

※ 연간 적정 신규과제 수 유지, 선정률 제고를 위해 “연구기간 3년 이하” 과제 중심으로 예산배분, 단 예산배분은 신규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연구기간 신청 규모에 따른 유형별로 구분하여 선정평가 및 중간평가 실시

※ (선정평가) 5년 이하 과제의 경우 온라인 평가,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온라인 평가 후 토론평가 추가

(중간평가) 5년 이하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 생략,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매 3년 단위로 실시

## □ 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 【공통사항】

#### ○ 기본사항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기본연구, 보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는 사업개편에 따라 연구기간별로 상·하반기에 신규과제를 선정  
※ (6~10년) 상반기 지원 / 6.1 연구개시, (1~5년) 하반기 지원 / 11.1 연구개시
- 과제는 원칙적으로 자유공모 방식으로 선정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중심의 평가를 통해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

#### ○ 신청자격

-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국내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으며, 참여 제한 기간 중에 있지 않은 이공학 분야 연구자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및 미래부 개인기초연구사업(신진, 중견, 리더)를 포함하여 1인 1과제 수행 가능  
\* 단, 수행 중인 과제의 잔여기간이 10개월 미만일 경우(사업개시일 기준)  
※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수행전념(3책5공)의 적용 예외
  - '15년 선정 한국형 SGER 1차년도 연차점점 대상 연구자는 하반기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신청 가능  
※ 단, 한국형 SGER 2차년도 계속과제 선정 시, 타과제 선정 취소
  - 사업 개편 및 현장 연구자들의 신청기회 보장 등을 감안하여 신청 시기 및 제한요건 등을 조정
- : 상반기 이공학개인기초(6~10년 지원)·신진·중견 중 1개(리더는 별도), 하반기 이공학개인기초(1~5년 지원) 1개 신청 가능

사 업			공 고		신 청		선 정	연구 개 시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개인 연구	연구 지원	리더연구	0	-	1개 과제 신청 가능	-	1개 과제	6.1
		중견연구	0	-	1개 과제 신청 가능			
		신진연구	0	-				
		이공학개인지초연구(6~10년 과제) - 기본, 지역대학, 보호연구	0	-				
		이공학개인지초연구(1~5년 과제) - 기본(SGER 포함), 지역대학, 보호연구	-	0	-	1개 과제 신청 가능	11.1	
	학문 후속	박사후국내·외연수	0	-	1개 과제 신청 가능	-	9.1	
		대통령Post-Doc.펠로우십					6.1	
리서치펠로우		-	0	-	1개 과제 신청 가능	11.1		
집단연구(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글로벌연구실, 대학중점연구소(교육부))			0	-	1개 과제 신청 가능	1개 과제	5.1/ 6.1/ 8.1	

※ 사업추진 여건 및 예산에 따라 신청 시기는 변동 가능

※ '15년 선정 한국형 SGER 1차년도 연차점검 대상 연구자의 경우,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 가능(단, 2차년도 계속과제 선정 시 타과제 선정 취소)

○ 학문분야별 예산배분 (기본·지역대학 신규과제)

- 최근 3년간 지원연구비, 신청과제수 등에 따라 신규예산의 80%를 사전배분하고, 적정 선정률 조정을 위한 20%를 사후배분

<연구비 규모별>

CRB 분야	기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평균 0.1~0.3억원	연평균 0.3~0.5억원	합 계	연평균 0.1~0.3억원	연평균 0.3~0.5억원	합 계
수학	20%	80%	100%	20%	80%	100%
물리학	15%	85%	100%	15%	85%	100%
화학	10%	90%	100%	10%	90%	100%
지구과학	-	100%	100%	-	100%	100%
<b>자연과학 소계</b>	<b>13.7%</b>	<b>86.3%</b>	<b>100%</b>	<b>12.2%</b>	<b>87.8%</b>	<b>100%</b>
기초생명	-	100%	100%	-	100%	100%
분자생명	-	100%	100%	-	100%	100%
기반생명	10%	90%	100%	10%	90%	100%
<b>생명과학 소계</b>	<b>3.4%</b>	<b>96.6%</b>	<b>100%</b>	<b>2.1%</b>	<b>97.9%</b>	<b>100%</b>
기초의학	10%	90%	100%	10%	90%	100%
응용의학	-	100%	100%	-	100%	100%
치의학	-	100%	100%	-	100%	100%
한의학	10%	90%	100%	10%	90%	100%

간호학	10%	90%	100%	10%	90%	100%
약학	-	100%	100%	-	100%	100%
<b>의약학 소계</b>	<b>4.9%</b>	<b>95.1%</b>	<b>100%</b>	<b>5.4%</b>	<b>94.6%</b>	<b>100%</b>
기계	-	100%	100%	-	100%	100%
건설교통	-	100%	100%	-	100%	100%
소재	-	100%	100%	-	100%	100%
화공	-	100%	100%	-	100%	100%
<b>공학 소계</b>	<b>-</b>	<b>100%</b>	<b>100%</b>	<b>-</b>	<b>100%</b>	<b>100%</b>
전기/전자	-	100%	100%	-	100%	100%
통신	-	100%	100%	-	100%	100%
컴퓨터·SW	-	100%	100%	-	100%	100%
정보기술융합	-	100%	100%	-	100%	100%
바이오·의료융합	-	100%	100%	-	100%	100%
에너지·환경융합	-	100%	100%	-	100%	100%
인간중심융합	10%	90%	100%	10%	90%	100%
산업기술융합	10%	90%	100%	10%	90%	100%
<b>ICT·융합연구 소계</b>	<b>1.4%</b>	<b>98.6%</b>	<b>100%</b>	<b>1.4%</b>	<b>98.6%</b>	<b>100%</b>
<b>합 계</b>	<b>4.7%</b>	<b>95.3%</b>	<b>100%</b>	<b>4.2%</b>	<b>95.8%</b>	<b>1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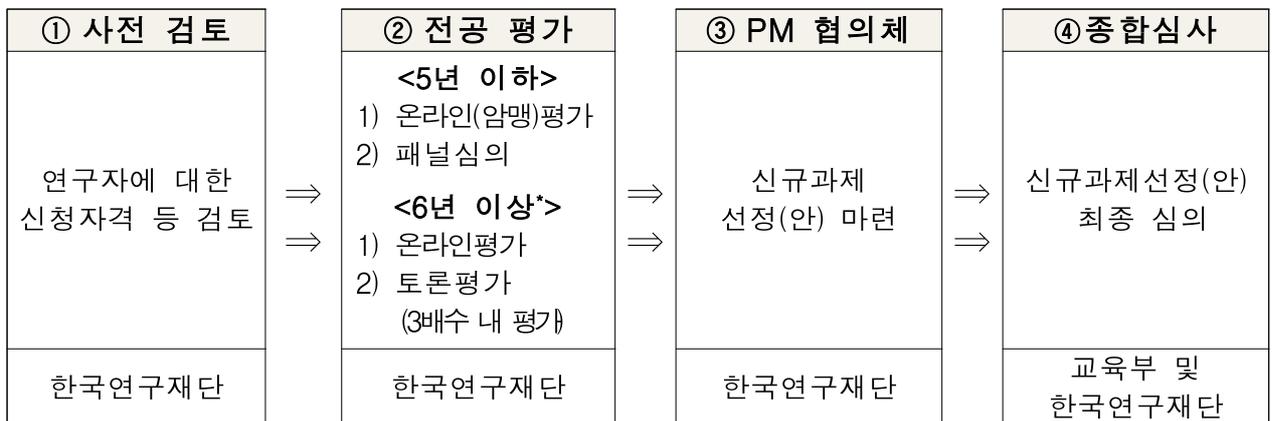
※ 선정비율은 신규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연구기간 별>**

사 업	1~3년	4~5년	6~8년	9~10년	합계
기본연구	80% 내외	5% 이내	5% 이내	10% 이내	100%
지역대학우수과학자	80% 내외	5% 이내	5% 이내	10% 이내	100%

**【최초지원 과제】**

○ 평가절차 및 방법



\* 총 연구비 규모에 상관없이 6년 이상 장기 지원 과제는 토론 평가 실시

※ 온라인 평가를 통해 연구비/연구기간 적정성에 대한 평가 진행

※ 보호연구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패널을 구성하여 토론 평가 진행

- (전공평가) 5년 이하 과제는 연구계획의 창의성 위주의 “암맹평가” 실시, 6년 이상 장기 과제는 연구자 역량 고려를 위해 “암맹평가 미실시”

구분	내용
5년 이하 과제	신청과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온라인(암맹)평가를 진행*하고, 동 결과를 토대로 패널심의 위원장이 패널심의 보고서** 작성
6년 이상 과제	신청과제별 절대평가 방식으로 온라인평가를 진행* 후, 동 결과를 토대로 선정과제의 3배수 이내 과제에 대하여 연구내용에 대한 토론평가 추가 실시

\* 과제별 3인이상의 온라인 평가자가 4단계(A~D) 등급 부여

\*\* (보고서 내용) 연구분야내 지원 우선순위, 과제별 연구비 및 연구기간 적절성

- (PM협의체) 패널심의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분야 PM의 협의를 통해 신규과제 예비선정(안) 마련
- (종합심사) 예비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검토하여 종합 심사를 추진하고, 최종 선정 결과 발표

#### ○ 평가항목

-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도전성, 연구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 연구비 및 연구기간의 적정성\*,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 등
- \* 연구비 및 연구기간 부적정으로 평가되면 선정에서 탈락하고, 조정이 필요한 경우, 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내용에 맞는 적정 연구비 지급 및 연구기간 조정

#### < 평가절차 >

적정		부적정
인정	조정	
신청연구비 전액 및 연구기간 전체	평가자 조정의견 → 연구자 협의 → 적정 연구비 및 연구기간	선정 탈락

### 【한국형 SGER】

#### ○ 기본방향

- 기존의 정형화된 연구과제 수행 방식에서 벗어나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실제 연구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새로운 지원 구조

- 과제 지원시 실패 가능성을 전제로 창의적·실험적 연구과제\*를 선별하여 지원

\* 시도되지 않은 새로운 발상에 대한 사전연구(preliminary research), 새롭게 등장하는 분야의 연구, 혁신적인 진보를 촉진할 수 있는 연구 등

○ 지원 규모 및 기간

- 기본연구 신규과제 중 10% 내외의 과제를 한국형 SGER 프로그램으로 추진(지원 기간은 최대 3년, 1차년도 지원단가는 최대 5,000만원)
- 1차년도 연차점검 결과에 따라 계속 지원 여부 및 연구비 차등 지급 (50% 이내 과제에 대하여 2~3차년도 연구비 최대 2배 이내 증액 지원)
- 후속연구가 필요한 경우 지난 3년간의 연구성과 및 연구잠재력을 평가하여 지원여부 결정

○ 과제 신청 및 접수

- 연중 수시로 SGER 프로그램에 대한 과제제안서 신청 접수
  - ※ 과제계획서는 기존의 형식이 아닌 5쪽 내외의 에세이(ESSAY) 형식으로 작성
  - ※ 과제 주제(적합한 연구자 Pool 포함)는 외부 연구자 및 학회가 공개적으로 제안하거나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프로그램관리자(PM)가 추천
- 연구재단 전문위원(RB, CRB), 및 프로그램관리자(PM)는 외부에서 제안된 과제를 포함하여 과제수행에 적합한 연구자 추천 가능
  - ※ 필요시 과제제안서 내용 수정·보완
- 기타 과제 수행 연구자의 자격은 기본연구와 동일하게 적용

○ 과제 평가 및 선정

- 평가는 하반기 1회에 걸쳐 시행
- 재단의 PM협의체에서 내부 검토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필요시 외부 전문가 심의 가능)

## □ 후속연구지원

### 【'15년 이전 선정과제】

○ 대상과제 : '16년 종료 예정인 과제 (기본연구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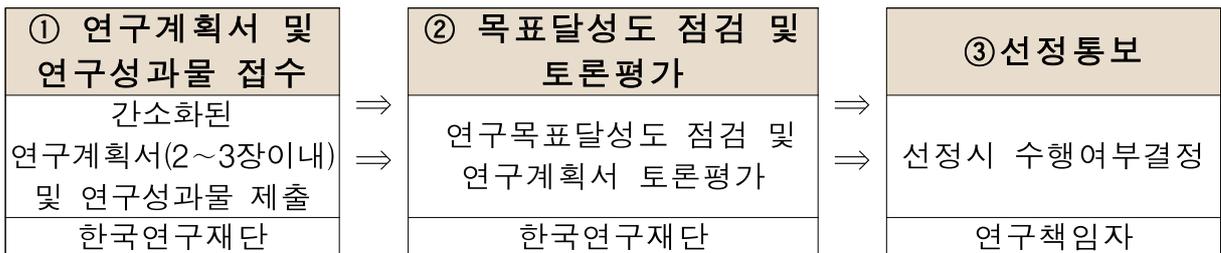
구분		종료일				
		4.30	5.31	8.31	10.31	합계
과제수	기본연구 (SGER 포함)	257	976	202	464	1,899
	지역대학우수과학자	-	168	-	-	168
합계		257	1,144	202	464	2,067

○ 신청시기 및 방식

- (신청시기) 하반기 최초지원 신규과제 공고 전 연구성과물 접수
- (신청방식) 후속연구를 원하는 연구책임자는 간소화된 연구계획서 및 연구성과물을 온라인으로 제출

※ (기본연구 및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상반기 종료 연구자는 연구종료 후, 하반기 종료 연구자는 연구종료전 제출

○ 평가절차



- 제출된 성과물에 대해 “연구목표 달성도”와 “연구계획서의 적절성 및 성과의 활용가능성”을 중심으로 학문단별 패널심의를 거쳐 선정
- 하반기 신규과제 접수이전에 평가를 실시하여 선정·지원함으로써 연구기회 확대

※ 평가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시행

#### <2015년 이전 선정과제 후속연구 지원제도 안내>

- 개인연구지원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후속·차상위 연계 지원 변경
  - (후속지원) 3년이내, 5천만원이내/연 후속연구 지원
  - (차상위 지원) 차상위 연계지원제도 폐지

○ 선정과제 컨설팅

- 후속연구 선정과제에 대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연구 방법 등에 대해 일부 수정

【'16년 선정과제】

- (대상과제) '16년 선정과제, 5년 이하 과제 중 성과우수과제
- (지원기간) 5년 이내로 후속연구 신청 가능하되, 선정연도 지원기준 (기간, 연구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최초지원 연구기간	후속연구	
	신청여부	지원기간
1~5년	○	1~5년 범위 내
6~10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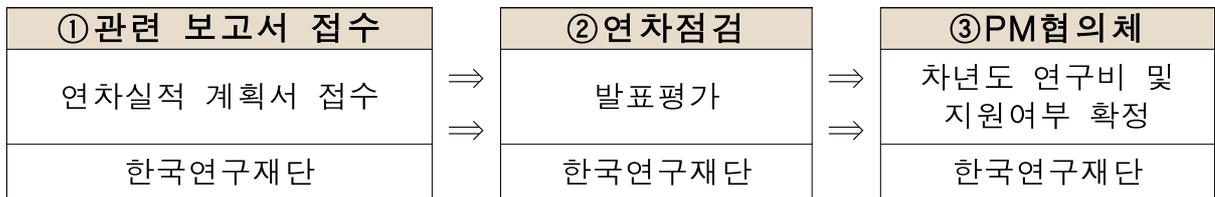
□ 계속과제 관리

○ 연차점검

- (대상 과제) '15년 선정 한국형 SGER 계속과제

※ 한국형 SGER을 제외한 '14~'15년 선정 계속과제 (총 2,995과제) 연차점검 : 연차실적계획서 제출 → 협약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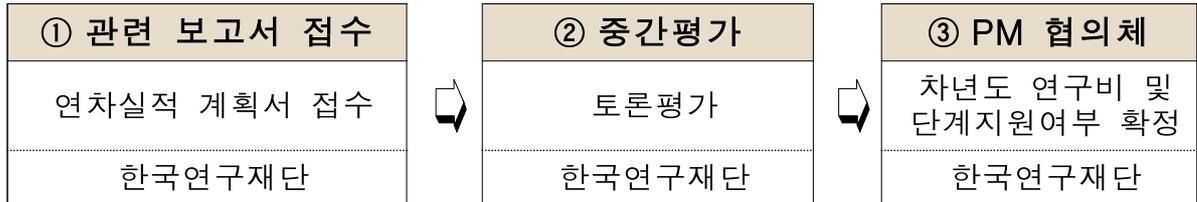
- (점검 방식) 연구계획서 대비 연구실적 및 차년도 연구계획 등을 통하여 한국형 SGER로서 연구발전 가능성에 대해 점검



- (결과 활용) 심도 있는 연차점검을 통해 상위 50% 이내 과제에 대해서만 계속 지원

○ 중간평가

- (대상 과제) 6년 이상 지원과제 ('16년 신규과제부터 적용)
- (평가 방식) 당초 설정된 연구계획 대비 기수행 연구기간 실적 (연구성과·업적 등) 및 향후 연구계획 점검을 위하여 **토론평가** 실시



- (평가 시기) 6년 이상 과제의 경우 **매 3년 단위로 중간평가** 실시  
 ※ 6년(3+3), 7년(3+3+1), 8년(3+3+2), 9년(3+3+3), 10년(3+3+3+1)
- (결과 활용) 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과정, 중간 결과 등에 대한 개선 의견 제시 및 미흡한 과제의 경우 연구기간·연구비 조정 가능

○ 연구과제 변경 평가

- (대상 과제) '16년 신규선정 과제  
 ※ '15년 이전 계속과제는 기존 방식대로 운영
- (주요 내용) 연구여건 변화에 따라 연구자가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 과제변경 희망 시, 타당성 평가를 거쳐 허용  
 ※ 단, 당초 과제 선정 시에 설정한 연구비 총액의 증액은 불가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여건 변화로 연구내용을 A에서 A'로 변경하고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변경</li> <li>- 뜻하지 않은 새로운 연구결과 도출로 추가 연구조사가 필요하여 연구기간을 6년에서 7년으로 변경</li> </ul>
----	---

□ 지원 중단 과제 관리 강화

- 지원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정부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한 연구자에게는 잔여기간을 지원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과제 연구자가 수도권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에 한함

- 단, 잔여연구기간이 2년 이상 남은 경우 협약 해약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부연구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연구자의 책무성 제고를 위해 기지급된 연구비 일부를 환수

※ 연구과제 중도 포기에 대해서는 연구비 환수를 협약에 명시

## □ 종료과제 성과관리

- 결과보고서 제출 : 온라인으로 결과보고서(3쪽 내외)를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 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연구수행 기간 및 연구종료 후 5년 이내 연구성과 미등록 연구책임자의 경우 2년 이내 참여제한 조치 가능

-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 종료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성과 소개서, 연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교육부 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 다 세부추진 일정

일정	추진내용
'16.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사업 세부시행계획 수립</li> <li>'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공모 및 접수</li> </ul>
'16.3~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선정평가</li> <li>계속과제 연차점검('14년 하반기 선정과제) 실시</li> <li>계속과제 연차점검('14년 상반기·15년 상반기 선정과제) 실시</li> </ul>
'16.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선정</li> <li>계속과제('14년 하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5.1)</li> <li>종료과제(기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중 후속연구지원 신청과제 연구성과물 접수</li> </ul>
'16.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신규과제(6~10년 지원) 연구개시(6.1)</li> <li>계속과제('14년 상반기·'15년 상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6.1)</li> <li>'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공모</li> <li>종료과제(기본연구,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중 후속연구지원 선정평가</li> </ul>
'16.7~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접수 및 선정평가</li> </ul>
'16.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선정평가</li> <li>계속과제 연차점검('15년 하반기 선정과제) 실시</li> </ul>
'16.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선정</li> </ul>
'16.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6년 신규과제(1~5년 지원) 연구개시(11.1)</li> <li>계속과제('15년 하반기 선정과제) 연구개시(11.1)</li> </ul>

## 라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개)

사업명		2015년 실적	2016년 계획*
기본연구	예산	▪ 237,050백만원	▪ 237,050백만원
	과제수	▪ 4,873개(신규 1,785개)	▪ 4,729개 내외(신규 1,905개)
보호연구	예산	▪ 1,250백만원	▪ 1,250백만원
	과제수	▪ 26개(신규 3개)	▪ 25개 내외(신규 14개)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예산	▪ 24,750백만원	▪ 29,750백만원
	과제수	▪ 498개(신규 226개)	▪ 595개 내외(신규 277개)

※ '15년 기본연구 신규과제의 경우 한국형 SGER 158과제 포함

\* '16년 신규과제 수의 경우 지원단가 50백만원 기준

# < 별첨 1 : 2016 교육부-미래부 기초연구지원사업 일정 >

## 신규과제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 인 연구	자유 공모	리더연구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중견연구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신진연구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이공학개원기초(6~10년)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이공학개원기초(1~5년)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학문 후속 세대	박사후 국내외 연수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수개시		
		리서치펠로우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대통령 Post-Doc 펠로우십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수개시						
전략 공모	전략과제 X프로젝트	상시 공고, 수시모집 등 다양한 방식 도입											
집 단 연구	선도연구센터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기초연구실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글로벌연구실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대학중점연구소	공고	계획서 접수	선정평가 최종선정			연구개시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계속과제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개 인 연구	리더 연구자	창의연구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연차점검	
		국가 과학자			연차점검				연차점검				
	중견 연구자	핵심연구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도약연구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최종평가
	신진 연구자	신진연구										최종평가	최종평가
	X프로젝트											최종평가	
집 단 연구	선도연구센터		연차점검		최종평가			단계평가	연차점검				
	기초연구실		연차점검		연차점검				연차점검	단계평가	최종평가		
	글로벌연구실				최종평가		연차점검	연차점검	재선정 및 단계평가	최종평가		연차점검 단계평가	
	대학중점연구소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최종평가		
기 반 구 축	전문연구정보활용			연차점검									
	실험데이터허브구축		연차점검										
	학문 후속 세대	리서치펠로우				연차점검						연차점검	
대통령 Post-Doc									연차점검		연차점검 단계평가		연차점검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별첨 2 : 2016 교육부-미래부 개인연구 사업 구조〉

[2015년]		[2016년]		
세부사업	내역사업	내내역	내역	세부
리더연구자	창의연구 (연3~8억×9년)	X프로젝트, 전략과제 등 (별도 설정)	전략 공모	개인 연구
중견연구자	전략연구 (별도 설정)	리더연구 (연3~8억×9년)	자유 공모	
	도전연구 (연3억×3년)	중견연구 (연5천만~3억×1~5년)		
	핵심연구 (연1억×3년)			
신진연구자	신진멘토링 (연5천만×3년)	신진연구 (연5천만~1억×1~5년)	자유 공모	
	여성과학자 (연5천만×3년)			
	신진연구 (연5천만×3년)			
이공학 개인기초	기본연구 (연5천만×3년)	이공학개인기초연구 (연1~5천만×1~10년) - 기본연구 - 보호연구 -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자유 공모	개인 연구
	보호연구 (연5천만×3년)			
	지역대학우수과학자 (연5천만×3년)			
	리서치펠로우 (연5천만×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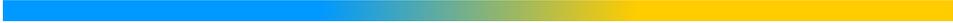
(내역사업 이관, 개인기초→학문후속세대 양성)

### < 별첨 3 : 2016 교육부-미래부 사업별 예산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5년 예산(A)	'16년 예산(B)	증감액(B-A)	증감률
합 계		1,080,792	1,109,503	28,711	2.7%
<b>【개인연구】</b>		898,631	923,726	25,095	2.8%
자유 공모	○ 리더연구	56,736	57,936	1,200	2.1%
	○ 중견연구	350,033	369,556	19,523	5.6%
	○ 신진연구	106,353	118,073	11,720	11.0%
	○ 이공학개인지초연구 (기초·지역대학·보호)	263,050	268,050	5,000	1.9%
	○ 학문후속세대양성	48,050	48,181	131	0.3%
전략공모		74,409	61,930	△12,479	△16.8%
<b>【집단연구】</b>		174,264	180,412	6,148	3.53%
○ 선도연구센터		105,850	108,749	2,899	2.7%
- 이학분야(SRC)		25,189	25,182	△7	△0.03%
- 공학분야(ERC)		33,236	36,617	3,381	10.2%
- 기초의과학분야(MRC)		33,225	32,550	△675	△2.0%
- 융합분야(CRC)		14,200	14,400	200	1.4%
○ 기초연구실		20,500	23,675	3,175	15.5%
○ 글로벌연구실		22,514	22,750	236	1.0%
○ 대학중점연구소		25,400	25,238	△162	△0.6%
<b>【기초연구기반구축】</b>		7,897	5,365	△2,532	△32.1%
○ 전문연구정보활용		2,167	2,800	633	29.2%
○ 기초연구실험데이터 글로벌허브구축		2,829	2,565	△264	△9.3%
○ 연구장비엔지니어 양성		2,901	-	△2,901	△100
<b>미래부 계</b>		744,292	768,034	23,742	3.2%
<b>교육부 계</b>		336,500	341,469	4,969	1.5%

※ 음영( ) 표시 : 교육부



## **IV. 행정사항 및 공통 적용사항**





## □ 교육부-전문기관 간 사업위탁 협약 체결

-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협약을 체결
- 단, 교육부 장관은 전문기관(장)이 수립한 사업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협약을 대신할 수 있음

## □ 전문기관 장의 사업비 관리

-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계좌 통합관리가 가능하나, 각 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관리 및 운용상 발생한 이자수입, 집행 잔액 및 과다지급액 등은 사업의 지원 및 관리 등에 목적에 맞게 사용 가능
    - 단, 이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야 함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제24조(사업비의 사용)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5조(연구개발비의 사용)

## □ 사업운용사항 보고

-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결과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 결과보고서 포함 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지원성과 등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 2

## 공통 적용사항

※ 해당 내용은 총괄적인 적용 사항이며, 일부 사업에 따라 변경 적용될 수 있음

### □ 사업추진상 적용규정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 과제의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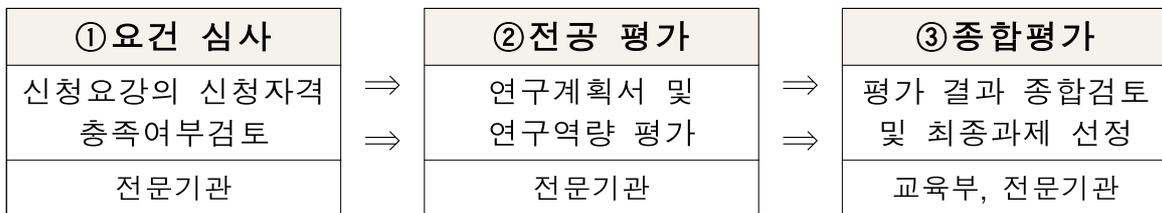
- 공고
  - (공고 방식) 교육부(www.moe.go.kr) 및 전문기관 홈페이지 일괄 공고
  - 사업 총괄 공고 시기 : 2016년 1월중(30일 이상 공고)
- 과제의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 연구책임자가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시스템(ernd.nrf.re.kr)를 통해 온라인 입력 및 탑재
  - (소속기관 확인)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학술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연구자”로서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자

○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1인 참여
-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 공동연구원 참여
-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일정한 기관 (연구소) 단위의 연구활동을 지원

□ 평가단계

○ 평가절차 및 내용



※ 사업별, 전문기관별 별도 평가절차 및 내용 가능

○ 요건심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

※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사업담당자가 추가 확인

○ 전공평가

- 온라인평가 : 온라인으로 전문가에 의한 개별 심사
- 패널평가 : 연구계획 집단 검토 및 토의에 따른 평가
- 발표평가 : 패널평가에서의 의문사항 확인, 연구진 연구수행 의지 및 기관협력사항 확인
- PM Review :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PM Reviewer 구성 : 학문단장, 책임전문위원(CRB), 전문위원(RB)

○ 종합평가

- 평가 주관 : 종합평가단

※ 종합평가단 구성 : 교육부 학술진흥과장, PM, 외부심사위원

## □ 선정절차 및 내용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 (예비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지원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지원 협약 체결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 (예비선정 및 최종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평가결과 예비발표 후 이의신청을 접수·심의한 다음 최종선정
  - ※ 예비선정 이전 선정평가 단계에서 중복성 검토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지원 협약 체결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 장을 경유하여 지급
  -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
- (지급시기)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및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 간접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 ※ 간접비산출위원회에서 기관별 간접비 적용비율 조정 및 확정
- (간접비율 적용) 간접비는 원칙적으로 **협약시점의 고시율을 적용** 하되, 사업별로 간접비 탄력적용 가능

## □ 종료과제 관리

###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 종료 후 6개월 이내
  - (내용) 연구결과보고서(자유 형식, 원문파일 탑재), 연구요약문(국·영문), 연구결과 개요보고서, 연구비 집행정산 내역서\*, 연구성과 및 연구 성과물 등의 **정보입력** 및 그 밖에 **협약으로 정하는 결과물**
    - ※ 연구비 중앙관리 부서에서 입력하며, 연차 정산 보고는 연차 종료후 3개월 이내 수행
  - (방법) 온라인 제출
    - ◇ 연구수행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제출된 연구결과 보고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연구결과물 제출

- (기한) 연구 종료 후 2년 이내
- (제출 기준) 게재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개인	지원 년수 × 논문 1편	▪ 논문 :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시 1편
공동 및 집단	지원 년수 × 논문 2편	▪ 저서·역서 : 단독 저작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작은 논문 2편 ▪ 특허 : 출원 특허 1개 당 논문 1편

- ※ 개인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시 주저자(제1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성과만 인정
-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저자로 참여한 성과만 인정
-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특허는 사사표기 사항 제외)
- ※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부과 가능. 단, 이 경우 사업공고 및 협약 체결시 해당 사항 명시

○ 결과 조치

- 결과평가 결과 미흡 과제는 참여제한 조치 부과(2~5년)

○ 연구성과관리

- 연구자는 연구개시부터 연구결과물 제출 후에도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성과\* 및 연구성과물\*\*을 탑재할 의무
  - \* 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 \*\* 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산출물
-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연구성과물을 송부

◇ 연구성과물은 연구성과 중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을 포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전문기관은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기초학문자료 센터(KRM)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적용 사업】

### ○ 연구결과 보고

- (기한) 연구 종료 후 1개월 이내 결과보고서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서를 평가하는 경우, 내용을 보완하여 연구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제출
- (내용)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 및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 의견서

※ 연구성과 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연구성과 소개서는 의무적으로 제출

### - (방법) 온라인 제출

◇ 한국형 Grant 적용사업은 연구종료 후 결과평가는 실시하지 않고, 간략한 성과개요 및 논문실적 등 주요 성과를 온라인으로 등록

◇ 연구수행으로 산출된 논문 등 연구성과는 차기사업 과제 신청시 활용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연구개발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최종(단계)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제출

※ 해당내용을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관련기관에 배포하거나 공개해야 함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공개제한 요청) 연구결과정보의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 연구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개제한 요청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에 비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

## ○ 연구성과관리

- (성과 등록) 연구종료일 이후 5년간 논문게재, 특허 등록 등의 성과가 도출되면 전문기관 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 등록해야함
- (성과소개서 제출) 과제 종료시 '연구성과 소개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구성과의 학문적/기술적 수준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구성과의 활용도 제고

\* 소개서 항목 : 성과유형, 활용분야, 연구단계, 타 부처 희망 연계사업 등

※ 수요자들이 기초연구성과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수요자 중심의 성과지도를 작성·제공

※ 우수 연구성과는 타 부처사업과 연계하거나 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지원

## □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다년 지원 과제

○ (관리내용) 연차 및 단계 보고서 접수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중단 통보일을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 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 신청 및 참여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

※ 참여제한 사유가 있으나 아직 참여제한 조치를 실제로 받지 않은 연구자는 과제 신청이 가능하나, 과제 선정 및 연구개시 후 참여제한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과제 선정 당면 취소

○ 연구 수행 전념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은 1책 3공**,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은 3책 5공** 내에서 과제 수행 가능

※ 책 : 연구책임자급 과제, 공 : 공동연구원급 과제

※ (인문분야)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의 연구기간 만료일이 '15.12.31일 이전인 과제는 연구수행 전념 과제 선정 시 미포함. 단, 1책 3공이라도 인건비 중복 수혜는 불가

※ (이공분야)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수행 전념 과제 수에 미포함(이공학개인지초연구지원사업은 연구수행 전념의 적용 예외)

○ **2016학년도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재정지원사업 제한 조치에 따라 일부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 대상사업 : 인문한국, 토대연구, 대학중점연구소(인문사회 및 이공), 신흥 지역연구 지원 사업

※ 사업자 공모 시 참여는 허용되나, 사업 선정 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제한 기간 동안 재정지원은 불가하며 대학 자체 지원으로 사업 수행

**< '16년 재정지원제한 조치['16. 1월 ~ 12월]>**

◇ D 등급 및 평가제외 대학

- 신규 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 **제한**
- 기존의 선정된 다년도 사업 재정지원 **지속**

◇ E 등급 대학

- 신규 사업 및 다년도 사업의 신규 선정 시 재정지원 **제한**
- 기존의 선정된 다년도 사업 재정지원 **제한**

**참고**

**사업별 위탁 및 전문기관 현황**

분야	사업명	기관
인문사회 분야	학문 후속세대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개인연구자지원사업(신진,중견,우수학자)	
	일반공동연구지원사업	
	학제간융합연구지원사업	
	토대연구지원사업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신흥지역연구지원사업	
	명저번역지원사업	
	우수논문지원사업	
	사회과학연구(SSK)지원사업	
	인문한국(HK)지원사업	
	인문학대중화사업	
	인문전략연구	
	저술출판지원사업	
	우수학술도서선정·지원	대한민국학술원
글로벌연구네트워크(GRN)사업	한국연구재단	
대학연구인력국제교류지원사업		
이공분야	학문 후속세대양성사업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지원사업	
	이공학개인기초연구지원사업	
한국학분야	한국학진흥사업	한국학중앙연구원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전통문화연구회
학술기반 구축	학술단체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
	이공계학술활동지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한국연구재단